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09시 53분



# 목차

목차	2
보도자료 - 교통	3
여수시,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...제때 검사해야	3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## 여수시,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...제때 검사해야

2022.08.08 조회수 260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양채원 연락처 061-659-5159

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미 실시 과태료...최대 300만원 7.5배 상향

여수시(시장 정기명)는 ‘건설기계관리법’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 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.

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 실시한 경우 ▲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▲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.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.5배 늘어났다.

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▲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▲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.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.

시 관계자는 “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”면서 “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”고 전했다.

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61-659-5159)로 문의하면 된다.

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3 여수시,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...제때 검사해야.jpg (242 hit/702.1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, '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' 시작

다음글

여수시,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 '웰다잉' 교육 실시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